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세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장세만 · 권기만 · 길윤옥
김상조 · 김익수 · 박광석
박교상 · 박순이 · 임춘구
전인철 · 정근수(11인)

1. 제안이유

-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만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비만예방 실천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지방조직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며 과도하게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비친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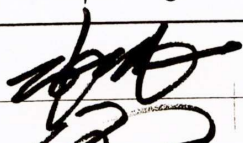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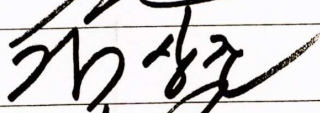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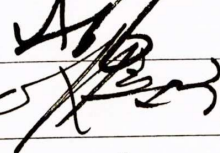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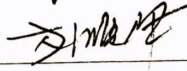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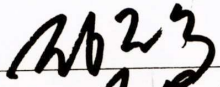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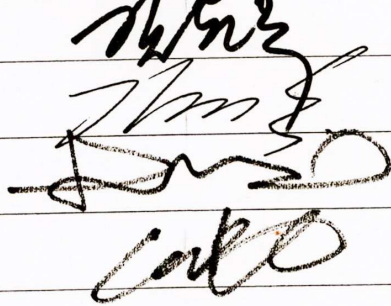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명부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심사하		
전인철		
가상조		
유교상		
김현주		
박수이		
심준우		
김영주		
김익수		
권기현		
조영석		